

2021년도

파주시 음부즈만
운영보고서



목 차

I

옴부즈만 제도 소개

1. 옴부즈만의 개념 08
2.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 08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09

II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소개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 배경 12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12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추진 경과 13

III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절차

1. 고충민원의 개념 16
2. 고충민원 신청 방법 17
3. 고충민원 처리 절차 18

IV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운영 결과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0
2. 고충민원 조사처리 결과 22
3. 기타 민원 처리 결과(이첩 등) 41

V 부 록

1. 홍보자료 50
2. 보도자료 51
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2
4.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3



파주시는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3월 18일 3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출범시켰다. 위원회가 출범하고 그 활동에 대한 세 번째 운영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행정의 불편부당한 처리에 대한 구제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민간인의 신분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매년마다 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원들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그 운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처리하였는지 되돌아보고 더 충실한 위원회 운영을 다짐하려 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려던 많은 계획들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나마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찾아가는 국민신문고’를 우리 파주시와 고양시, 김포시 시민들을 위해 파주시 운정행복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어 다행이었던 것 같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많았으나 단순한 내용들로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기보다 각 부서에서 처리할 민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직접 조사한 민원에 대해 각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시정 및 의견을 표명한 민원들을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처리하겠다고 대부분 수용한 것은 고무적(鼓舞的)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운영 4년차에 접어든 2022년에는 보다 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였으면 한다. “찾아가는 위원회 홍보활동”을 계획하여 읍, 면, 동의 각종 단체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집중 알리는 것은 물론 “시민의 고통을 함께 해소하려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겠다. 물론 지난해 부족했던 활동을 되돌아보고 금년에는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해소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행정의 불편부당한 처리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활동에도 힘써야 할 것 같다.

더불어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조사율을 높이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해 집행부에서 불수용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한다. 행정의 불편부당한 처리에 대한 구제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2021년 위원회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2021년도 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발간한다.

2022년 3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일동

옴부즈만 제도 소개

1. 옴부즈만의 개념
2.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1. 옴부즈만의 개념

가. 옴부즈만(ombudsman)이란?

-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으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말함

나. 옴부즈만 제도

- 행정청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정부와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

2.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

가. 행정의 권한 증대 및 다양화·복잡화·전문화 경향

- 행정 재량권 확대로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 증대
- 행정재량 영역은 복잡·다양성으로 인해 사법제도로 다루기에 통제 곤란

나.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

- 사후통제 수단인 사법적 구제수단(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다. 행정의 자기시정을 통한 신뢰성 회복

- 고충민원에 대해 중립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시민과 행정 양자간의 갈등 완화
-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 제공으로 시민과 행정 간 완충 역할 및 상호 신뢰 제고

라. 고객중심의 행정가치 대두

- 공공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개선 노력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가. 행정의 통제 기능

- 행정청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나.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기능

- 복잡·다양화 되면서 시민과 행정청, 이해관계 집단간, 지역간 갈등이 증가되고 있으나 소송 등 전통적 분쟁해결 수단으로는 한계
- 시민과 행정의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사법구제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양자간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다. 행정개혁 기능

- 행정 속성상 한번 결정된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하려는 관성으로 인해 스스로 개선이 어려움
- 옴부즈만은 이러한 관성을 깨트려 위법·부당한 행정 관행이 개선되도록 자극을 주어 행정개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라. 행정정보의 공개 기능

- 민원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새로운 정보를 알리는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

마. 민주적·정치적 대변 기능

- 힘 있는 다수를 대표하는 결정이 아닌 소수집단, 소외 및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 대변

II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 배경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추진 경과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 배경

급속한 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른 복잡·다양한 고충민원 증가와 행정 재량권 확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과 행정 간에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가. 설치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구성개요

- 신분 : 위촉직(민간인)
- 임 기 : 4년(연임 불가)
- 근무형태 : 비상근(주 20시간) 합의제
- 직 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다. 구성현황

연번	직위	성명	위촉일	주요경력
1	위원장	임우영	 2019.3.18.	前)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前) 국회의장 비서관 前)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	위 원	조복록	 2019.9.18	前) 경기도의회 의원 前) 푸른파주21 상임대표
3	위 원	박완재	 2020.9.16	前) 파주시 경제국장

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 직무관할 기관

- 파주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파주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 직무 범위

-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시장 및 파주시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 위 치 : 파주시청 별관 2층
- 주 소 : 파주시 시청로 51, 2층(아동동, 파주시청 별관)
- 연락처 : 031) 940-4464~4466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추진 경과

- 2018.02.28. 파주시 옴부즈만 설치 기본방안 수립
- 2018.04.20.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2018.10.11. 파주시 옴부즈만 설치·운영 계획 수립
- 2018.10.22.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옴부즈만팀 신설)
- 2019.01.05. 옴부즈만 공개모집 추진
- 2019.03.08.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

- 2019.03.18. 옴부즈만 위촉(3명)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개시
- 2019.04.26.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분야별 외부 전문가 9명)
- 2019.05.10.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공포
- 2020.03.24. 2019년 파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공표
- 2021.03.30. 2020년 파주시 옴부즈만 운영상황 공표

Ⅲ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절차

1. 고충민원의 개념
2. 고충민원 신청 방법
3. 고충민원 처리 절차



1. 고충민원의 개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 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등

※ 고충민원 제외 대상 (이첩·각하)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민원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소속행정기관 등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 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고충민원 신청 방법

- 직접방문, 팩스, 우편 : 파주시 시청로 51, 2층(아동동, 파주시청 별관)
- E-mail : pajuminwon@korea.kr / 팩스 : 031) 940-4089
- 신청서식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비치 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가능
※ www.paju.go.kr : 파주시청 홈 > 민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우측 상단 배너 > 위원회 소개 및 민원 신청)
- 문의전화 : 031) 940-4464~4466

한반도 평화수도 PAJU

통합검색

9.7°C 구름많음 미세먼지(중음)·초미세먼지(중음)

소통 참여 | **민원** | 정보공개 | 공고·홍보 | 파주소개 | 분야별정보

종합민원안내	· 민원봉사실안내 · 지방세민원실안내 · 민원수료 · 무인민원발급 · 편리한 민원실책 ·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편람·서식	
온라인 민원	· 민원상담신청 [] · 접수민원조회 [] · (구)민원조회 [] · 정부24(인터넷민원발급) · 민원처리공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 위원회 자료실
여권민원	· 여권민원접수 · 여권민원안내 []
차량종합민원	· 자동차 온라인 민원 · 자동차등록 ·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 · 이륜자동차등록 · 간헐기계등록 · 차량세금과태료 · 자동차관리과 위치 · 추정차민원 []
민원신고센터	· 규제개혁 · 부정/불량식품신고 []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 · 추정차위반신고 [] · 무단쓰레기신고 [] · 불법유동경고물신고 [] · 관급공사체불신고 [] · 장애인원을 주차구역 신고 []
청렴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 파주시청 헬프라인 [] · 공익신고 안내 · 갑질피해 신고센터 [] · 청탁금지법 안내

한반도 평화수도 PAJU

통합검색

9.7°C 구름많음 미세먼지(중음)·초미세먼지(중음)

소통 참여 | **민원** | 정보공개 | 공고·홍보 | 파주소개 | 분야별정보

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홈 > 민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역할하고 담당하시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려주세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읍부조민이 제3자의 중립적 조사·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읍부조민(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이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합니다.

구성현황

- 구성인원 : 3명(4년, 단임)

설치·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파주시 읍부조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 대상

[파주시 홈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안내 화면]

3. 고충민원 처리 절차



IV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 고충민원 조사·처리 결과
3. 기타 민원 처리 결과(이첩 등)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가. 접수 및 처리 현황

년도	합계	위원회 직접조사									미조사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합의 권고	심의 해소	기각	각하	취하	이첩	각하
'19	60	28	1	9	-	1	3	8	5	1	31	1
'20	98	35	-	22	1	-	2	7	2	1	50	13
'21	104	22	-	14	-	-	-	6	-	2	76	6
계	262	85	1	45	1	1	5	21	7	4	157	20

나. 민원분야

년도	합계	일반 행정	세무 행정	보건 복지	환경 녹지	건설 교통	도시 건축	문화 관광	농림 산림	기타
'19	60	7	-	4	8	18	15	1	6	1
'20	98	15	4	5	11	22	28	2	5	6
'21	104	24	3	7	14	21	27	1	2	5
계	262	46	7	16	33	61	70	4	13	12

다.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수용 현황

년도	합계			의견표명			시정권고	합의권고 및 제도개선
	계	수용	불수용	소개	수용	불수용	수용	수용
'19	11	10	1	9	8	1	1	-
'20	23	22	1	22	21	1	-	1
'21	14	14	-	14	14	-	-	-
계	48	46	2	45	43	2	1	1

※ 고충민원 처리결과 유형

구 분	조사여부	내 용
시정권고	여	피신청인의 처분 사실행위 부작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 변경 개선 등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여	피신청인의 처분 사실행위 부작위 등이 위법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권고	여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제도개선	여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여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	여, 부	사인 간의 권리 관계 등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심의종결	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신속히 해결방안을 안내하여 해소되거나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해소된 경우
이첩	부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으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취하	여, 부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원에 의하여 취소를 한 경우

2. 고충민원 조사·처리 결과

가. 의견표명

의견
표명

00면 00리 건축허가 적법성 여부 조사 요청

피신청인 파주시장(건축과, 지역발전과)

민원내용

- ▶ 신청인은 (주)****건설이 00면 00리 ***번지 임야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개발행위면적이 5,000㎡ 이상이기에 6m 폭의 진입도로가 필요함에도 확보 계획 없이 개발행위가 허가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정당한 절차 없이 도로등재가 된 00리 마을 토지의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임.

판단 및 결론

- ▶ 해당 개발행위는 준공 전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한 사항으로 피신청인의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음.
- ▶ 그러나 도로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있어 필수조건인 사항은 허가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허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임.
- ▶ 따라서 향후 피신청인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필요한 경우 정당한 권리의 확보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와 유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필요한 용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용권을 확보한 후 허가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의견표명

처리결과 수용

- ▶ 향후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시 필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전 소유권 및 사용권 등을 사전에 확보된 사항을 확인 후 허가 처리할 예정

의견
표명

생산관리지역 내 제조공장에 관한 법 위반조사 요구

피신청인 파주시장(기업지원과)

민원내용

- ▶ 신청인은 ○○면 ○○리 ***번지 일원의 생산관리지역에서 운영 불가능한 업종의 제조공장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주민을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지 사업자를 위하여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하는지 확인해 줄 것 과 현재 신축된 소매점 건물 이외의 건물이나 창고가 들어오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요구함.

판단 및 결론

- ▶ 해당 불법 제조공장은 최초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운영 가능한 농산물 가공 공장으로 허가받았으나, 불법으로 업종 변경하여 운영하다 피신청인에 의해 적발되어 공장신설에 대해 허가 취소되고, 경찰에 고발되어 처벌을 받은 공장임.
- ▶ 그러나 해당 공장은 처벌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는 판단임.
- ▶ 따라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해당 공장에 대해서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과 '생산관리지역 식품공장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와 승인 후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적으로 관리를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의견표명

처리결과 수용

- ▶ 위반공장에 대하여 고발조치 완료 및 생산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관리 예정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 제도개선 요구

피신청인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정책과)

민원내용

- ▶ 신청인은 2021년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역 농협에서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파주시청에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의 거주지가 타 시에 있어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는 파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불합리한 제도이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임.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농지가 파주시 관내에 있으며, 그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재산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어 주소지만을 이유로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상공인 지원금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최근 개정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3조 2호 가목의 규정과 같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파주시 관내 토지구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의견표명

처리결과 수용

- ▶ 2022년도 고품질 발작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사업 지침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농지소재지가 관내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 예정

의견
표명

사유지 내 상·하수도, 오수 배관 이설 요청

피신청인 파주시환경수도관리본부장(상수도과, 하수도과)

민원내용

- ▶ 신청인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상·하수도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었으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었지만, 최근 매설된 상수도관을 교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담당 부서에 사유지 내의 모든 배관을 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대체부지가 없기에 이설은 불가능하며, 신청인이 파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는 행정편의적 잘못된 행정처리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

판단 및 결론

- ▶ 피신청인의 배관 이설이 가능한 대체 부지가 없다는 주장은 현장 조사등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됨으로 「민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배관이 매설된 토지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 하는 등 보상에 따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 ▶ 피신청인은 보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시를 상대로 소송에 의한 판결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민법을 근거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하며,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그 적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
- ▶ 또한, 현황 도로에 매설되어있는 배관들을 한쪽으로 매설하여 최소한이나마 민원 토지를 파주시에서 매입하는 방안과 민원 토지의 사용료 등 보상에 대한 방안을 우선 마련하여 신청인과 협의하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 소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의견표명

처리결과 수용

- ▶ 신청인과 배관 매설을 위한 토지 매입을 협의 예정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에 대한 민원 제기

피신청인 파주시장(지역발전과)

민원내용

- ▶ 신청인은 자동차 야영장 개발행위에 따른 우수, 오수, 상수도, 통신, 전기, 빗물받이, 관로 등은 민원인 가구단지 소유의 기존 관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자동차 야영부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민원인과 상의없이 도시계획심의를 상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판단 및 결론

-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은 허가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절차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민원인과 상의에 의하여 상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는 오수관로의 매설에 따른 사유지 도로를 사용하는 문제 등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절차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민원인 등 사인 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판단함.
- ▶ 따라서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2호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조사를 종료하고, 사업 시행과정에서 신규 관로를 매설할 경우 기존 관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민원인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의견표명

처리결과 수용

- ▶ 허가 조건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이행

건축공사 현장 민원에 대한 처리의 적법성 여부

피신청인 파주시장(감사관, 지역발전과, 산림농지과, 주택과)

민원내용

- ▶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인근 토지의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로 인하여 기존 배수로로 훼손하고 그 위에 옹벽을 축조한 것이 안전성의 문제가 없는지와 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함.

판단 및 결론

- ▶ 개발행위 허가 당시 토지이용계획 및 배수계획도 등의 관련 서류에 배수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배수시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담당자의 시인이 있었음.
- ▶ 배수시설을 덮은 스틸그레이팅 위에 옹벽을 축조한 것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기존 옹벽의 상태 및 ‘구조안전진단검토서’에 따른 기초공사 방법을 확인할 수 없었음.
- ▶ 또한, 당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 옹벽의 높이보다 변경허가 절차 없이 2.3m를 불법으로 축조하였으나 이를 사유서만 제출받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없이 추인한 것을 확 인함.
- ▶ 이에, 당초 허가 당시 배수시설에 대한 담당자의 부주의함이 있었는지, 배수로를 덮고 옹벽을 축조한 것에 대한 구조 안전 및 개발행위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항을 행정처분 등의 절차 없이 사유서만으로 추인한 경위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조사 하여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의견표명

처리결과 수용

- ▶ 허가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조치 및 처분 없이 추인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라 담당자에 대한 처분을 완료함.

의견 표명

공장 허가사항 변경 신고에 따른 '재난재해평가' 요구 부당

피신청인 파주시장(안전총괄과)

민원내용

- ▶ 신청인은 ○○리 ***-*번지 공장신축허가 신청자로 2021. 9. 29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2021. 10. 5. 신청인의 토지와 경계를 접한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었기에, 관련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산지 개발행위 면적을 초과하였다며 '재난재해영향평가'를 받아 보완할 것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본인의 공장허가와 신규 개발행위허가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음에도 위와 같은 보완은 불합리하다며 적법성 여부를 검토 요청함.

판단 및 결론

- ▶ 조사결과 피신청인은 두 허가지에서 나오는 우수 등은 같은 맨홀에서 합류되어 배제되는 점과 임야개발의 특성상 인접부지의 부지계획과 경사도 조정 등의 협의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같은 영향권역에서의 개발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재난재해영향평가'를 보완토록 하였음.
- ▶ 하지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의 '비고 3'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규 개발행위를 신청한 부지의 토지이용계획도에는 배수계획도 등이 민원 신청지에서 합쳐지는 것이 아닌 별도의 계획에 따르는 것으로 확인됨.
- ▶ 따라서 민원신청지와 신규 개발허가 신청지를 합산하여 재해영향평가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정한지 재검토 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의견표명

처리결과 수용

- ▶ 두 업체는 각각 별도의 배수계획을 가지고 있어 같은 영향권역의 개발사업에서 제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검토 예정

의견
표명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사용허가의 부당함 호소

피신청인 파주시장(지역발전과, 건축과), 파주시도시기반관리본부장(도로관리과)

민원내용

- ▶ 신청인은 건축법상 법정도로에서 건축허가지까지 진출입하는 도로의 폭을 6m 이상으로 명시하였는데, 인접 다른 필지와 달리 □□동 ***번지와 ***번지의 경우 허가지 부근만 6m 이상의 도로폭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었는바, 이 건이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

판단 및 결론

- ▶ 조사결과, 건축허가지에 대한 진출입도로를 도로점용허가 받아 설치한 가·감속차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인접지와 달리 신청인의 건축허가지는 부체도로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허가를 신청함.
- ▶ 따라서, 신청인의 건축허가지 진출입도로 허가에 대한 피신청인의 판단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 ▶ 다만, 피신청인들이 교통사고의 우려 등 안전대책이 필요한 부체도로에 대해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허가한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되지 않음.
- ▶ 이에 향후 이 부체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이해되는 수준에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도로 등 제반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행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의견표명

처리결과 수용

- ▶ 향후 부체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 시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개선 대책을 사전에 검토 및 확보 후 허가여부를 결정

도서납품 계약 보류 철회를 요구

피신청인 파주시장(교하도서관)

민원내용

- ▶ 신청인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준비한 도서를 ○○도서관 담당팀장이 납품을 보류시키고 지연시키는 사유와 향후 체결된 계약의 진행 사항에 대한 답변 및 현재 피신청인이 변경을 추진 중인 도서납품계약서 세부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임.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이 요구하는 납품보류의 사유, 향후 계약의 진행방향, 도서납품계약서 세부조항의 개선에 대한 재검토 및 담당 공무원의 처벌 등은 감사실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거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직무의 범위가 아니므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사를 종료함.
- ▶ 그리고 피신청인은 감사관실의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해 엄정히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의견표명

처리결과 수용

- ▶ 법률자문 결과를 참고하여 도서 구입 계약 절차를 개선하고 계약 방식 변경 예정

파주시 홍보판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요청

피신청인 파주시장(문화예술과)

민원내용

- ▶ 신청인은 ○○○○연구소의 대표자로 ○○행복센터와 ○○회관에 설치한 파주시 홍보판에 1960년대 ○○면(현 □□읍)사거리 사진과 ○○역 모습이 담긴 사진 등 ○○○○연구소에 저작권이 있는 사진 두 컷이 사용된 것을 확인함.
- ▶ 해당 사진은 ‘○○○지’ 제작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다른 용도로 무단 사용되었기에 사용 경위 및 사진의 출처를 밝히고, 피신청인의 저작물 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임.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 자료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여러 곳에 게재되는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저작물 관리에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업무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 이에 신청인이 요구하는 ‘○○ 역사관’ 스토리보드의 사진 출처 등과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음.
- ▶ 따라서 신청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 자료의 사용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저작권이 인정되는 각종 저작물에 대한 통합 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의견표명

처리결과 수용

- ▶ 각종 저작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신청인의 권리인정을 위해 신청인과 지속 협의 추진

개발행위 부동의에 따른 이의제기

피신청인 파주시장(지역발전과)

민원내용

- ▶ ○○읍 ○○리 ***-#번지 외 1필지에 1층 근생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건축의제)을 하였으나, 지역발전과에서는 침수 우려로 건축과의 개발행위 협의 요청에 대해 '부동의'로 회신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의 개발예정지는 진입로의 일부 구간이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는 개발예정지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진입로의 일부 구간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직접적인 침수 피해가 없음을 확인.
- ▶ 또한,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홍수관리구역에 대한 업무는 친수하천과 소관의 업무로서 친수하천과가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으며, 친수하천과는 이 신청민원과 관련한 사전협의에서 '허가 가능'이라고 판단하여 '의견없음'으로 회신함.
- ▶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업무의 주무부서에서 판단한 의견에 따르는 것은 물론 관련 법률을 적용할 때에 신중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의견표명

처리결과 수용

- ▶ 신청지의 진입도로에 대한 침수 대책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심의를 통해 적극 검토

소하천 예정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요청

피신청인 파주시장(지역발전과, 친수하천과)

민원내용

- ▶ 신청인은 공장입구의 농지를 활용하여 대형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공간확보를 위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해당 농지가 파주시의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공구조물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규제 완화를 요청.

판단 및 결론

- ▶ 해당 부지는 '파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포함된 구역으로 신청인의 개발행위 사업구역에서 제척함이 타당하며,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선의 변경은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함.
- ▶ 다만, 토지 전체면적의 약 77%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그 시행시기가 불확실하고,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참작하여 담당부서에서는 조기에 토지를 수용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의견표명

처리결과 수용

- ▶ 토지 소유자가 소하천 미지급 용지 신청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신청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

의견 표명

개인 소유 농지가 현황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리요청

피신청인 파주시장(건설과, 친수하천과, 법원읍)

민원내용

- ▶ 신청인의 소유 농지가 현황 하천으로 이용되고 실제 하천부지는 타인이 국유재산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불법으로 점용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유지(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하고, 국유지와 신청지를 교환할 것을 요구

판단및결론

- ▶ 해당 하천은 과거 홍수 피해가 있었던 곳으로 유사시 물의 흐름이 용이하도록 하천의 기능을 복원하여 수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용도폐기하여 매각하는 것보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하천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함.
- ▶ 또한 해당부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과 공유수면 점용 대상임에도 국유재산 사용허가로 처리 된 경위를 조사하고, 사용허가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의견표명

처리결과 수용 여부 검토 중

나. 심의종결

심의종결
(기각)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피신청인 파주시장(주택과)

민원내용

-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민간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에 따라 보증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한 결과 ‘주택가격에 대한 선순위채권비율이 60%를 초과한다’며 반려처분을 한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재고를 요청하는 민원임.

판단및결론

- ▶ 신청인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신청에 대한 피신청인의 반려처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제7항 및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위법·부당한 사항은 없음.
- ▶ 이유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민간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신청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가격에 대한 선순위채권 비율이 60%이하일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보완서류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 ▶ 신청인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충족되지 않는 기준을 개선한 이후 다시 등록을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에 “심의종결(기각)” 함.

의결결과 심의종결(기각)

심의종결 (기각)

울타리 안쪽 데크 존치 청원

피신청인 파주시도시기반관리본부장(공원관리과)

민원내용

- ▶ 신청인이 설치한 데크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피신청인에게 접수되어 원상복구 처분이 시행된 점에 대하여 설치된 데크의 부지가 비록 파주시 소유의 토지이지만 울타리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신청인 업소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가족의 안전 확보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며, 해당 부지를 약 20년 동안 점유 관리하였기에 원상복구 처분에 대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임.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해당 데크 시설물에 대하여 어린이와 가족의 안전 확보 목적으로 설치하였기에 안전시설물로서 조건부 존치 등 사람과 그 삶이 존중되는 해법을 소원하고 있으나,
- ▶ 해당 부지는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임대(대부)·매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함에 따라 “심의종결(기각)” 함.

의결결과 심의종결(기각)

심의종결 (기각)

공유재산 갱신계약용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피신청인 파주시도시관광공사장

민원내용

- ▶ 신청인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재계약하면서 감정가격의 산출방식, 즉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면적 산출을 건축면적에 건폐율 20%를 곱해 515㎡로 적용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2,020.81㎡를 적용함으로써 높은 감정가격이 산출되었다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감정가격을 재 산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임.

판단 및 결론

- ▶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한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최대 건폐율 2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축물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 신청인이 주장하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대지면적을 산출하였을 경우, 최대 건폐율 20%를 곱해 대지면적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 현재 건폐율 4.35%를 적용하여 산출해야 타당하다고 판단됨.
- ▶ 따라서 신청인이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대지면적을 다시 조정해 감정가격을 산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이유 없으므로 “심의종결(기각)” 함.

의결결과 심의종결(기각)

심의종결 (기각)

건축허가(도로확보) 적법성 여부 및 도로확보

피신청인 파주시장(지역발전과, 조리읍)

민원내용

- ▶ 신청인은 ○○리 ***번지 건축허가에 대해 진입도로의 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4m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있음에도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준공되거나 진행 중이므로, 해당 건축허가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함.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제출된 허가 서류 및 현장 확인 결과 마을 현황 도로를 포함한 실제 차량 통행이 가능한 4m 도로의 폭을 확보하여 개발행위협의(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판단됨.
- ▶ 따라서 해당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협의(허가) 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신청인의 민원 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2호에 따라 “심의종결(기각)” 함.

의결결과 심의종결(기각)

심의종결 (기각)

식품제조가공업의 지식산업센터 입점 가능여부 재심의 요청

피신청인 파주시장(기업지원과)

민원내용

- ▶ 신청인은 식품제조업 운영자이며,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전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 업종은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치대상 업종코드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불가 통보받아, 이에 재심을 요청함.

판단 및 결론

- ▶ 피신청인이 승인한 ‘파주시 ○○ ○○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와 언론 등에 게재 된 실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용어 차이로 인하여, ‘주요유치업종’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모집 공고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 업종코드 외에는 불가함을 확인함.
- ▶ 또한, 모집공고문 9항에 따르면 ‘기타 분양계약 및 입주에 관한 유의사항’에 의하여 ‘수분양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분양계약 체결 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을 진다.’와 ‘수분양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주대상 업종 및 자격을 위한 심사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하며, 입주 부적격 업체로 판정되어 입주가 불가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
- ▶ 따라서, 신청인은 이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므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2호에 따라 “심의종결(기각)” 함.

의결결과 심의종결(기각)

심의종결 (기각)

도로 점용료 부과에 대한 민원

피신청인 파주시도시기반관리본부장(도로관리과)

민원내용

- ▶ 신청인은 파주시 ○○면 ○○리 *** 번지와 ***번지를 공부상에 도로가 있어 매입하였는데, 매입 당시 ○○리 ***-1번지와 ***-*번지를 전 소유주가 일부분을 도로에 편입된 상태로 매입하였음. 이후 파주시에서 도로를 개설하여 1m 높이에 길이 25m의 옹벽을 설치하여 공부상에는 도로가 있지만 사용할 수 없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점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부상의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며, 해당 지역은 민간인 통제 지역으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지역임. 또한 해당 도로는 1997년 파주시에서 민간인통제구역 내 최초의 주거시범단지인 임진강변 ○○리 ○○○촌을 조성하면서 도로를 확장 개설하고 옹벽이 설치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함.
- ▶ 또한, 전 소유주가 농지로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기존옹벽 철거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민원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 2호에 따라 “심의종결(기각)” 함.

의결결과 심의종결(기각)

3. 기타 민원 처리 결과(이첩 등)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1	이메일	김00	·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제한 기준	·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의하여 지급됨을 안내	
2	이메일	정00	· 파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관련 불합리한 규정 개선 요청	· 착한 임대료 효과의 지속성을 위하여 임대료 인하기간에 중점을 두고 조례가 제정되어, 감면액이 인하임대료의 총액을 넘지 않음을 안내	
3	이메일	김00	· 회사 앞 공사장 진동으로 인한 피해 해소 요청	· 해당 건설현장을 확인 후 소음진동의 최소화를 위하여 추가 억제시설 설치 검토, 새벽 시간 작업금지 등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안내	
4	이메일	조00	· 파주스타디움 내 탁구장 사용료 관련 민원	·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따른 시설 사용료 산정방법과 단체 월 회원 사용료와 개인 월 사용료, 일일사용료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안내	
5	팩스	정00	· 건축현장 노무비 체불에 대한 조치 요청	· 건축주에 해당 민원을 전달하여 기성금 지급일에 체불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안내	
6	이메일	이00	·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민원	·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규정상 파주시에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규정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7	팩스	김00	· ○○리 농지 성토 관련 민원	· 해당 성토업체 관계자에게 덤프트럭 통행시 세륜 후 출차 및 살수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8	이메일	이00	· 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민원	· 파주형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규정상 파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규정에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	
9	이메일	신00	·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 조치 요청	· 해당 건설사측에 야적물 덮개 미설치 관련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내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살수 등 비산먼지 사전신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지도하였음을 안내	
10	이메일	김00	· ○○○동 및 ○○동 일원 도로정비 요청	· 해당 도로는 국유지와 사유지가 혼용되어 전면 재포장의 경우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11	이메일	김00	· 도로파손에 의한 자동차 피해 보상 요청	· 피해사항에 대하여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접수 요청 하였으며,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함을 안내	
12	이메일	민00	· 불법으로 축조된 옹벽에 대한 사후추진 요청 및 개발행위허가 도로지침 완화 적용 요청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추진절차는 현행규정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경우 추진절차를 거쳐 양성화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도로개설권리와 관련된 소송이 수허가자와 임차인 간에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후 관련 지침에 따라 허가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안내	
13	이메일	김00	· 불법건축물 건축 진행과 해당 행위로 인한 인근 건물 파손 및 폐기물처리 위반 조치 요청	· 해당토지는 법원읍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완료되었으며, 소음·진동·분진 저감을 위한 방음 펜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함. 또한 배수설치는 토지주의 동의를 필요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신청가능함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14	팩스	송00	· 자신의 사업장 앞 신성교통 차고지 및 교하환경 통행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한 분진과 소음 조치요청	· 차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바닥포장이 의무사항이며,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차고지에 시에서 수목식재를 강제할 수 없음을 안내	
15	팩스	유00	· 산내마을 9단지 대중교통 불편사항 개선요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고양시와 협의 사항이나 고양시 대중교통 정책상 부동의되어 노선 신설이 불가함을 안내	
16	이메일	박00	· 오피스텔 세대당 주차대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 해당 건축물은 공장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여 허가 처리된 사항임을 안내	
17	이메일	한00	· 놀이터 설치 요청	· 현장확인 결과 국공유지나 마을회 소유 토지 등이 없어 어린이 놀이터 설치에 적합한 부지가 없음을 안내	
18	이메일	임00	· 검산동 불법 육견 경매장 조치 요청	· 불법사항들에 대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완료되었으며, 원상복구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행정조치 예정임을 안내	
19	이메일	송00	· 본인 주택 마당 앞 하수도 문제로 인한 침수 피해 조치요청	· 현장 확인 결과 우기철 집중 강우시 배수시설 부족에 따른 침수피해 대비시설을 설치할 예정임을 안내	
20	팩스	최00	· 개 짖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방지조치 요청	· 안내문 및 유선상으로 견주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개 소음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 조치하였음을 안내	
21	팩스	최00	· 대문 앞 움푹 파인 도로로 인한 피해방지 조치 및 가로등 고장 조치 요청	· 침하된 도로를 재포장하고, 가로등을 교체하여 민원 불편 사항을 해소함	
22	이메일	이00	· 불법산지 전용 및 묘지 철거 관련 민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이전명령을 하였고, 현장 확인 결과 분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완료함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23	이메일	양00	· 도로 보수 공사 요청	· 해당 토지는 비법정 도로로 사유지에 해당하여 파주시에서 보수할 수 없으며,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전제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하여 보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24	팩스	이00	· 같은 장소에서 잦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요구	· 해당 구간의 도로와 가드레일 간격을 조정하여 재설치 예정임을 안내함	
25	팩스	박00	· 직권말소 된 건축물 대장 회복요청	· 해당지번에 실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말소된 것으로, 건축물 대장의 회복은 건축물대장 지번과 건축물이 실제 위치한 지번이 달라 정정하고자 할 경우 건축물 대지의 범위와 그 소유 및 사용에 대한 권원이 확인되어야 함을 안내	
26	우편	췁무0000	· 재산세 감액경정 요청 민원	· 췁점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으로 과세되는 것이 적법함을 안내	
27	우편	왕00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관련 제도개선 요청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예비 허가는 결격사유와 범죄사실 해당 여부를 조회하여 득할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의 의견 조회 및 회신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여 즉시 처리가 불가함을 안내	
28	팩스	박00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조치 요청	· 악취 발생 원인을 찾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오염도 분석을 의뢰하고 업체 담당자에게 에어커튼 설치 보완, 집진시설 개선 등 시설을 보완할 것은 행정지도 함	
29	이메일	김00	· ○○면 ○○동산 지구 단위계획 관련 민원	· ○○동산 지구단위계획은 2013, 2017년 재정비를 통하여 토지분할 규제를 이미 완화하였으며, 소규모 호텔 난립 방지를 위하여 최소 분할 면적(3,000㎡)이 확정됨을 안내	
30	이메일	유00	· 어린이집 소재지 변경 요청	· 입주완료 된 공동주택은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따라 동일 단지 내에서만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됨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31	이메일	황00	·○○도서관 도서납부 계약관련 민원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 제1항 제3호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에 해당하여 조사 불가함을 안내	각하
32	이메일	이00	·본인 토지 생산관리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요청	·용도지역의 변경은 집단화된 개발완료지 및 용도지역 경형화 등 경기도 용도지역 변경 기준에 적합한 부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안내	
33	방문	김00	·임진각 상가 변상금 관련 민원	·사용수익허가 종료 후 자진 퇴거를 고지하였으나, 무단 점거하였기에 퇴거 소송을 함. 판결에 의하여 변상금 부과는 불가피함을 안내	
34	팩스	손00	·가로등 및 CCTV 설치 요청 민원	·전신주를 이용하여 LED 보안등 설치	
35	이메일	조00	·월릉면의 '한태말길'의 규정에 대한 문의	·지적도상 도로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명 주소 부여를 위해 설정해 놓은 구간임을 안내	
36	이메일	조00	·가로등 불빛 수면 방해로 인한 이전 요청	·가로등 빛 가리개를 설치하여 주택 방향의 가로등 불빛 저감 조치	
37	방문	이00	·배수관 무단 사용 관련 민원 신청	·기 허가된 도면상 미시공된 부분은 관련법에 따른 조치 후 준공 예정임을 안내	
38	이메일	박00	·○○읍 ○○리 대로 변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조치요청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개조, 소음기 탈거 등의 소음 유발행위 저감지도를 실시하고 지속 점검 실시 예정임을 안내	
39	이메일	인00	·집앞 도로 통행하는 폐기물처리 차량들로 인한 피해조치요청	·폐기물 처리업체 차량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우회하여 운행할 것을 지도함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40	팩스	장000 아파트	· 위험수목 제거 요청 민원	· 현장 방문하여 수목 제거 조치 완료	
41	방문	민00	· 일자리경제과 민원 응대 관련 민원	· 중식시간 미 준수 관련으로 코로나로 부서 별로 시간대를 나누어 식사시간을 조정하 였음을 안내	
42	이메일	임00	· 신축 중인 창고 준공 검사 보류 청원	· 주변 주택과의 조화를 위한 외관 건축에 대 한 건의를 건축관계자에게 전달하여 협조를 구했음을 안내	
43	이메일	김00	· 토지구 미동의 불법 펜스 조치 요청 민원	· 건축관계자에게 경계 측량 결과에 따라 펜 스를 설치하고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안내	
44	이메일	김00	· ○○○동 체육공원 소음 해결 요구	· 소음자제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장 단속 및 안내방송으로 계도를 철저히 할 것을 안내	
45	이메일	김00	· 신규 주택 건축허가 준공 지연에 대한 도움 요청	· 건축행정시스템 상 공사 시공자의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이 어려우므 로 건축관계자 변경 신청하여 시공자 인증 할 것을 안내	
46	메일	박00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이 의제기 및 환경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불만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 어린이보호구역 안 전 및 화재 위험으로 보완의견이 있었으며 소음단속 공무원의 업무태도에 대한 불편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함을 안내	
47	메일	김00	· 보호자 동의없이 미 성년자에게 자동차 렌 탈 금지요청	· 여객운수사업법상 미성년자의 대여를 제한 하는 규정은 없으나 관내 업체에 법정 대리 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지도할 것을 안내	
48	우편	안00	· ○○1리 수해 우려에 대한 빗물펌프장 설치 요청	· 침수 우려 지역으로 조사되어 연차별로 계 획을 세워 시급에 따라 수해 방지 관련 사업 추진 예정임을 안내	
49	메일	김00	· 파주출판도시 내 LH 아파트 옆 하천 악취 민원	· 인근 공장의 방류수 악취로 해당 사업장에 고농도 폐수 위탁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하 고 지속적으로 점검 계획임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50	메일	김00	· 〇〇면 〇〇리 소각장 반대 민원	· 소각장 신설 관련 절차 안내 후 주민의견 및 민원 사항을 입지 선정위원회에 전달 예정임을 안내	
51	메일	최00	· 주차질서팀의 처분절차를 위한 강제처분의 해명요구	· 도로교통법상 안전을 위하여 주정차금지 구역임을 표시하고, 파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라 해당 구역을 특별주차단속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임을 안내함	
52	메일	정00	· 〇〇〇〇〇〇주택조합 관련 민원	· 주택법에서 별도 규정한 내용이 없어 파주시에서 해당 주택조합에 대한 감사 및 사업 진행이 불가함을 안내	
53	메일	황00	· 주야간 보호센터 차량 이용 중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민원	· 송영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 책임보험 대상임을 안내	
54	메일	한00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 사전통지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임을 안내	
55	메일	이00	· 공동주택 앞 건축허가로 인한 조망권 피해 민원	· 민원 대상 블록은 연립주택 용지로 건축가능한 최고 층수는 4층이며, 관련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처리되어 공사 진행됨을 안내	
56	메일	이00	· 해외백신 등록 요청 민원	· 접종증명서로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해외접종력 등록 가능함을 안내	
57	팩스	박00	· 〇〇동 부체도로 도로 포장 확장요청	·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통해 타당성 검토 후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추진 가능함을 안내	
58	우편	곽00	· 농어촌공사에서 사유지에 설치한 수로 원상 복구 요청민원	· 농어촌 공사 소관으로 이송 조치	이송
59	메일	정00	· 〇〇〇 〇〇〇〇수영강사 처우개선 요청	·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 중이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60	메일	신00	· ○○케어 관리담당자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처사에 대한 고충민원	· 수요자의 요양원 입소 이후 부정 수령한 활동비 반납을 요청하고 이로 인한 패널티 안내	
61	메일	안00	· 10년 지나서 받은 과태료 고지서 부과취소 요청	· 자인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오랜 기간 체납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음을 안내	
62	메일	익명	· ○○마을 5,6,7 단지 뒤편 공원관리 관련 민원	· 배설물 방치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방범용 CCTV는 불법행위 단속이 불가함을 안내	
63	팩스	이00	· 가로등 설치 요청	· 해당 위치에 보안등을 22년 상반기에 설치 예정임을 안내	
64	메일	강00	· 쓰레기 불법소각 확인 요청	· 해당 시설은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로 폐기물을 차량이 아닌 관로로 운반하며 사진상의 연기는 수증기임을 안내	
65	메일	홍00	· 장애인 주차과태료 관련 민원	· 관련법에 따라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함을 안내	
66	메일	박00	· (주)○○○○개발 폐기물 유출 조치 요청	· 유출된 폐기물은 신속히 처리하고 시설물을 보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안내	
67	방문	박00	· 본인 주택 앞 공동주택 신축 현장 조망권 관련 민원	· 건축법에서 규정한 이격거리를 준수하여 설계되었음을 안내	
68	우편	김00	· 상장 수여 요청	· 명확한 공적을 확인할 수 없어 표창 수여가 불가함을 안내	각하

V

부 록

1. 홍보자료
2. 보도자료
3.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홍보자료

The screenshot shows the PAJU website homepag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파주시청', '파주뉴스', '문화관광', 'On 시장실', and '파주시의회'. The main header features the PAJU logo, a search bar, and social media links. Below the header, there are tabs for '소통·참여', '민원', '정보공개', '공고·홍보', '파주소개', and '분야별정보'. The '민원' tab is selected, displaying a list of services such as '종합민원안내', '민원편람·서식', '온라인 민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여권민원', '차량종합민원', '민원신고센터', and '청렴신고센터'.

The screenshot shows the '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page on the PAJU website. The page title is '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and the breadcrumb trail is '홈 > 민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heading '역할하고 담당하시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려주세요.' followed by a paragraph explaining the committee's role in resolving citizen grievances. Below this, there are sections for '구성현황' (Composition Status) and '설치·운영 근거' (Basis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The '구성현황' section lists 3 members (4-year term, single term). The '설치·운영 근거' section includes references to the 'Local Self-Government Act' and 'PAJU Ombudsma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Regulations'. A final section titled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 대상' (Applicants for the Citizen Grievance Handling Committee) is also visible.

2. 보도자료

경기도민일보

2021년 12월 02일 목요일 005면 사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파주시, 15일 운영행복센터 다목적홀서

파주시는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동신문고를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

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주요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사회복지, 법률

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 분쟁, 노동관계 등이며 위 분야에 대해 시민은 누구든지 상담 받을 수 있다.

유대승 감사관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파주시 감사관 음부즈만팀(031-940-5971~4)에 민원사항을 사전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동신문고 운영이 지역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이성훈기자

京仁毒日

2022년 01월 18일 화요일 005면 종합

파주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6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 17개 및 기초 자치단체 226개)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지난 1년(2020년 10월~2021년 8월)간 처리한 민원사무에 대해 3개 분야(▲민원행정 관리

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5개 항목(▲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을 평가했다.

평가는 기관 유형별 상대평가로, 평가 결과에 따른 5개 등급을 부여했으며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해 실시했다.

파주 김정운기자

tdhslawkdd@kmaeil.com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8.04.20 조례 제1421호

(일부개정) 2019.05.10 조례 제149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라 파주시에 설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그 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행정기관 등”이란 제9조 각 호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공기업, 출연기관, 법인·단체,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옴부즈만”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하는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3.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민원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직무·구성 등

제3조(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에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옴부즈만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의 옴부즈만 회의로 대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 1. 고충민원 처리 방향 결정에 관한 사항
 - 2. 옴부즈만 활동 보고에 따른 의결 사항
 -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집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2. 시장 및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5.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제5조(옴부즈만의 자격 및 임기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한다.(개정 2019.5.10)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 중에서 대표옴부즈만을 호선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옴부즈만 회의) ① 옴부즈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옴부즈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 다만,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합의권고
2. 제22조에 따른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3. 제23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4. 제27조에 따른 감사의뢰
5. 종전 의결례의 변경

④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만이 정한다.

제9조(옴부즈만의 직무관할기관) 옴부즈만이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소속행정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법 제17조제2호를 준용한다.

제11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사·처리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되는 옴부즈만은 제8조 제4항에 따른 재적 옴부즈만의 수(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12조의2(옴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2019.5.10)

①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옴부즈만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지역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법 제35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소속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신청인이 구체적 증거나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소속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시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시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소속행정기관등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 제21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22조(시정의 권고와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제23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제24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

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소속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음부즈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소속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나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시장은 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10.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9.03.08 규칙 제65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옴부즈만 운영 및 관리

제2조(옴부즈만 회의 소집)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갈음하여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개최일 전일까지 알릴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 회의 보고사항)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계획
2.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0조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등 중요사항
7. 옴부즈만 회의에서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옴부즈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모든 옴부즈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옴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옴부즈만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옴부즈만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옴부즈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옴부즈만은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의 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3. 옴부즈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만이 되며, 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파주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⑤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접수·조사·처리

제10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구술·전화·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13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문서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

제15조(조사 실시 통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기간 연장) 위원회가 조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7조(정당한 사유) ① 조례 제18조제2항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때
2.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을 1년이 경과한 후 인지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② 옴부즈만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③ 대표옴부즈만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옴부즈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합의) ① 위원회가 조례 제21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확인한다.

-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 옴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표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옴부즈만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 회의에 부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 처리한 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결정의 통지 등) 위원회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27조에 따라 파주시에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① 위원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 결과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파주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활동비 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신분증명서) ①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

발급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27조(사무국 구성) ①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른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또는 6급 상당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을 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 활동 지원부서의 장이 대리할 수 있다.

제28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옴부즈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9조(운영상황 보고·공표)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옴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소속행정기관 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의 운영사항을 파주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고와 함께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에 따라 대표옴부즈만 또는 사무국장이 전결처리 한다.

제31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32조(문서 및 관인) 위원회는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같은 규정 제33조에 따라 청인(廳印)을 가진다.

제33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4조(정보의 보호) 옴부즈만 등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만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년도
파주시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발행일 2022년 3월
발행처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편 집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2층(아동동, 파주시청 별관)
전 화 031-940-4464~4466
팩 스 031-940-4089
디자인 경기애드 (031-946-1972)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